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인”에 관한 고찰

김혜림[○], 박광현^{*},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hrkim1301@hanmail.net[○], sanaigo@kwu.ac.kr^{*}, park3822@kwu.ac.kr^{*}

A Study on "the other person"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Hye-rim Kim[○], Kwang-Hyun, Park^{*}, Jong-Ryoel Park^{*},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키워드: 정보통신망법(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타인(the other person), 死者(decedent), 자연인(natural person), 법률해석(legal interpretation), 비밀누설(leaking the secret)

I.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점은 ‘타인’에 사자(死者)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人)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을 의미하는데 자연인이란 생존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 정보통신망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死者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II.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

1. 학설

1.1 사자 포함설

‘타인’의 범위에 死者도 포함된다는 견해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

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¹⁾

그 근거로는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死者를 포함시키는 것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비록 사망한 자의 비밀도 이러한 보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死者를 포함하는 것은 목적론적 확대해석이 되지 않는다.

셋째,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문서에 허무인 또는 死者명으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²⁾ 위 해석은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 사자 불포함설

타인의 범위에 死者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형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人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칭하는데 死者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법질서 통일성입장에서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를 생존여부에 의해 결정하고 있고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소멸사유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³⁾

둘째,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死者에 대해서는 형법 제308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 해석상 타인의 범위에 생존하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사인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여 대구 지하철역 화재사고 및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메신저로 전송해 준 사안에서 제1심과 제2심은 死者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만약 이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는데⁴⁾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을 생존하는 사람에 한정시킬 이유

가 없다는 입장이다.

III. ‘타인’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정보통신망법은 제24조와 제49조를 구분하여 ‘개인의 정보’에는 생존자의 정보에 한정하고 있고 ‘타인의 정보’에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死者의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금지되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형사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행해져야 한다. 만약 ‘타인’의 범위에 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범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해석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리 해석

문리 해석은 용어의 의미에 따라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 방법을 말한다. 이 해석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가 기준이 되어 유추해석의 한계가 된다. 타인이란 문언적으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死者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2. 체계적 해석

체계적 해석이란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에 따라 용어의 맥락 및 관계를 합리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 방법이다. 형사법은 일반적으로 死者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특히 형법총론상 타인의 범위와 형법각론상 타인의 범위에 살아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체계적 해석상 정보통신망법에서도 타인의 범위에 死者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3.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란 법률 의미가 상이한 경우에 그 의미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⁵⁾을 우위에 둬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死者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헌법합치적 해석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이란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인간을 의미하는데, 死者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범위에 死者를 제외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형법의 이념인 것이다.

1)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2)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도 사망의 개념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실종선고나 인정사망도 권리능력이 근본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4)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62 판결.

5) 대법원 1999.9.17. 98도2036 판결. 화대 윤락녀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IV. 결 론

형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을 통해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과 헌법 합치적 해석을 통해 그 범위와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에 반하며 목적론적 해석과 헌법 합치적 해석 관점에서도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창조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범위는 전체 법질서통일성 입장에서 생존하는 사람으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형벌법규의 유추를 금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Havard University Press 1975.
- [2] Ha, Tae-Young, "The Other Person in Criminal Law and Special Criminal Law," Journal of Dong-A, Vol. No. 44, 2009.
- [3] Gu, Mo-Yeong, "Methodical Reflection on the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4 No.1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2002.